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, 토지보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고,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,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매몰비용 등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보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토지보상 및 현물보상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(안 제20조의8)

- 1) 토지보상이 기존 현물보상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보상의 기준·절차를 적용하도록 함
- 2) 승인권자와의 협의 대상에 현물보상 주택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복합지구에서 소셜믹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나. 주민대표회의 관련 지침 조정(안 제20조의10)

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현황 확인 의무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신설에 맞추어 승인여부 확인 의무로 변경

다. 매몰비용 등 지원의 세부범위 및 방법(안 제20조의12)

공공주택사업자의 매몰비용등에 대한 지원금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, 지원금 신청 및 검증·지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

라.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서식 삭제(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)

같은 내용의 서식이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중복된 서식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이메일(sunhyen@korea.kr) 또는 우편(아래 주소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우편 보내실 곳

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(전화 044-201-4386, 팩스 044-201-5633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

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
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